

의안번호	제2860호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고성군수
제출연월일	2024. 11. 14.

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860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11. 14.

제 출 자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 지정 규정 신설 및 위원 수를 관련 조례에 맞게 정비하고, 상위 법령상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부위원장 지정 규정 신설(안 제5조제3항)
- 나. 위원을 공적심사위원으로 하므로 위원 수를 공적심사위원 수에 맞게 정비(안 제5조제2항)
- 다.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에 “가산금” 용어를 “가산세”로 정비(별지 제1호서식)
- 라.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에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정비(별지 제3호서식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2조, 제55조, 제146조
 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
- 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
 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분석 평가
 -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36602호(2024. 9. 13.)]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4-1472호
가) 예고기간: 2024. 9. 20. ~ 10. 10.
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5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4. 본문 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7인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공적심사위원으로 한다”를 “7인 이내로 구성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, 위원은 「고성군 포상 조례」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한다.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(생략)</p> <p>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<u>7인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공적심사위원으로 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③ · ④ (생략)</p>	<p>제5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 <u>7인 이내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③ <u>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, 위원은 「고성군 포상 조례」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한다.</u></p> <p>④ · ⑤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)</p>

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

수 신 : 고성군수

참 조 : 재무과장

발 신 : (인)

(단위 : 원)

구 분	건 수	금 액			포 상 금
		합 계	본 세	가 산 금	
합 계					
과년도 채납액 징 수	소 계				
	1년차				
	2년차				
	3년차				
숨 은 세 원 발 굴	소 계				
	미 등 기				
	탈루·은닉 세 원				
	무단점용				
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	세정발전				
	세입증대				

※첨 부 : 1. 공무원의 경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회 의결서 사본 1부.
2. 민간인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사본 1부.

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

수 신 : 고성군수

참 조 : 재무과장

발 신 : (인)

(단위 : 원)

구 분	건 수	금 액			포 상 금
		합 계	본 세	가 산 세	
합 계					
과년도 채납액 징 수	소 계				
	1년차				
	2년차				
	3년차				
숨 은 세 원 발 굴	소 계				
	미 등 기				
	탈루·은닉 세 원				
	무단점용				
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	세정발전				
	세입증대				

※첨 부 : 1. 공무원의 경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회 의결서 사본 1부.
2. 민간인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사본 1부.

[별지 제3호서식] <현행>

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

(단위 : 원)

납기	부과자 (제보자)			세목구분	발굴 세원	납세의무자		징수 일자	담당 사무관 확인	포상금	지급일
	직급	주소	성명 (주민등록번호)			주소	성명				

※ “구분”란에는 미등기, 탈루·은닉세원, 무단점용, 세입증대 등을 표시

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

(단위 : 원)

납기	부 과 자 (제보자)			세 목	구분	발 굴 세 원	납세의무자		징수 일자	담 당 사무관 확 인	포상금	지급일
	직 급	주 소	성 명 (생년월일)				주소	성명				

※ “구분”란에는 미등기, 탈루·은닉세원, 무단점용, 세입증대 등을 표시

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
-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
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
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작성자: 재무과장 이 현 주

□ 지방세기본법 제2조(정의)

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3. “가산세”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.

24. 삭제* <2020. 12. 29.>

* “가산금” 규정

□ 지방세기본법 제55조(납부지연가산세)

① 납세의무자(연대납세의무자,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(이하 “과소납부”라 한다)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(이하 “초과환급”이라 한다)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.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, 과소납부분(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(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,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(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)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7. 12. 26., 2018. 12. 24., 2020. 12. 29.>

3.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(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, 가산세는 제외한다) × 100분의 3

4.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

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(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, 가산세는 제외한다) ×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

□ 지방세기본법 제146조(포상금의 지급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1.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·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
2.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
3.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(稅源)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
4.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·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
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, 지급기준,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(規程)으로 정한다.

□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

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6. 3. 29., 2017. 7. 26., 2020. 2. 4.>

1. 법률·대통령령·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
2.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